

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(귀속)					
① 주소지				② 전화번호	
③ 성명				④ 생년월일	
사업장	⑤ 소재지				
	⑥ 업종				
	⑦ 주업종코드				
	⑧ 사업자등록번호				
	⑨ 과세기간부터부터부터부터
	까지까지까지까지
⑩ 소득종류	(30, 40)	(30, 40)	(30, 40)	(30, 40)	
총 수 입 금 액	⑪ 장부상 수입금액				
	⑫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				
	⑬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				
	⑭ 세무조정 후 수입금액 (⑪-⑫+⑬)				
필 요 경 비	⑮ 장부상 필요경비 (부표 ④의 금액)				
	⑯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				
	⑰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				
	⑱ 세무조정 후 필요경비 (⑮-⑯+⑰)				
⑲ 차가감 소득금액(⑭-⑱)					
⑳ 기부금 한도초과액					
㉑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					
㉒ 해당 연도 소득금액 (⑲+⑳-㉑)					
<p>「소득세법」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출 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>세 무 서 장 귀하</p>					
첨부서류	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(별지 제82호서식 부표) 1부			수수료 없음	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「소득세법」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, 한 사업장 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,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(별지 제41호서식)를 첨부합니다.
2. ⑦주업종코드란 :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.
3. ⑩소득종류란 :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가. 부동산임대소득 : 30
나. 사업소득 : 40
4. ⑪장부상 수입금액란 :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(별지 제82호서식 부표)의 ⑩수입금액 합계와 같습니다.
5. ⑬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란 :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, 판매장려금, 국고보조금, 보험차익, 준비금 및 총당금의 환입액 등을 기재합니다. 간주임대료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(1)·(2)(별지 제53호서식)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6. ⑭세무조정 후 수입금액란 : [7]부동산임대소득·사업소득명세서[별지 제40호서식(1)] ⑧총수입금액 또는 별지 제40호의 3서식의 ⑫총수입금액과 같습니다.
7. ⑮장부상 필요경비란 :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(별지 제82호서식 부표)상의 ⑬필요경비 합계와 같습니다.
8. ⑫·⑬·⑮·⑰란 :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(별지 제48호서식)상의 조정금액을 해당 사유별로 합계하여 각 란에 기재합니다.
9. ⑳기부금 한도초과액란 : 해당 연도의 기부금(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)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초과금액을 기재합니다.
10. ㉑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란 : 해당 연도의 기부금(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)이 한도에 미달하고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산입액을 기재합니다.

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(귀속)						
① 주소지			② 전화번호			
③ 성 명			④ 생년월일			
사업장	⑤ 소재지					
	⑥ 업 종					
	⑦ 주 업 종 코 드					
	⑧ 사업자등록번호					
	⑨ 과 세 기 간		. . .부터	. . .부터	. . .부터	. . .부터
			. . .까지	. . .까지	. . .까지	. . .까지
⑩ 소 득 종 류		(30, 40)	(30, 40)	(30, 40)	(30, 40)	
장부상 수입금액	⑪ 매 출 액					
	⑫ 기 타					
	⑬ 수입금액 합계(⑪+⑫)					
필 요 경 비	매 출 원 가	⑭ 기초재고액				
		⑮ 당기 상품매입액 또는 제조비용(⑳)				
		⑯ 기말재고액				
		⑰ 매출원가(⑭+⑮-⑯)				
	제 조 비 용	재 료 비	⑱ 기초 재고액			
			⑲ 당기 매입액			
			⑳ 기말 재고액			
			㉑ 당기 재료비 (⑱+⑲-⑳)			
	㉒ 노 무 비					
	㉓ 경 비					
	㉔ 당기제조비용(㉑+㉒+㉓)					
	일 반 관 리 비 등	㉕ 급 료				
		㉖ 제 세 공 과 금				
		㉗ 임 차 료				
		㉘ 지 급 이 자				
		㉙ 기업업무추진비				
		㉚ 기 부 금				
		㉛ 감 가 상 각 비				
		㉜ 차 량 유 지 비				
		㉝ 지 급 수 수 료				
㉞ 소 모 품 비						
㉟ 복 리 후 생 비						
㊱ 운 반 비						
㊲ 광 고 선 전 비						
㊳ 여 비 교 통 비						
㊴ 기 타						
㊵ 일반관리비등계 (㉕~㊴의 합계)						
㊶ 필요경비 합계 (⑰+㊵)						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「소득세법」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, 한 사업장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,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2. ⑦주업종코드란 :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.
3. ⑩소득종류란 : 아래의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"○" 표시를 합니다.
가. 부동산임대소득 : 30
나. 사업소득 : 40
4. ⑭·⑮기초재고액란은 직전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말재고액과 같아야 하며, ⑯·⑳기말재고액란은 다음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초재고액이 됩니다.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기 매입액만 기재합니다.
5. 제조비용란(⑲~㉒) :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제조업 등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
6. ㉔제세공과금란 : 사업장에서 부담한 재산세, 상공회의소비, 협회비 등을 기재합니다.
7. ㉔기업업무추진비란의 해당 과세기간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[1,200만원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,600만원) × 과세기간 월수/12]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1) 및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(2)를 첨부해야 합니다.
8. ㉔기부금란의 기부금(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) ㉔감가상각비, 대손충당금, 퇴직급여충당금, 특별수선충당금, 국고보조금, 보험차익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